

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11872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118723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23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변론 종결 2019. 5. 2.

판결 선고 2019. 6. 2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23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논산시 C 전 14,371㎡ 중 제1심판결문 별지 도면(이하 '별지 도면'이라 한다)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6㎡,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1㎡, 별지 도면 표시 17 내지 21,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ㄷ) 부분 26㎡, 별지 도면 표시 22 내지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 각 지상 건물 중 각 3/9 지분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② 논산시 D 임야 1,248㎡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6, 27,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ㅁ) 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6, 28, 29,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2㎡ 각 지상 건물 중 각 3/9 지분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용덕

판사곽희경

판사송승환

별지